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진단과 대안 모색

유보통합실행계획 발표를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진단

공동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

주최 유아학교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 유아특수교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육원의회, 전국유아특수교육의회생협의회, 청주오름번학부모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유가정어른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노동조합,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청주오름번학부모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주관 | 유아학교연대 (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이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유이특수괴원회,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전국특수교육과학생협의회, 청주오름벗학부모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나다순))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이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특수교사 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 청주오름법학부모회 한국유이특수교육학회 행복하고육학부모회(기내 다순))

일정표

조사장: 손혜숙 경인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시 간	주 요 내 용
15:00~15:10	내빈 소개 및 축사, 인사말
15:10~15:20	발제자 및 토론자 소개와 진행 안내
	01_유보통합 교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점: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포함하여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
15:20~15:40	02_유보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장,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교수
15:40~16:40	◆ 나윤미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장 ◆ 윤지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김현숙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회장 ◆ 신경옥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 서승호 │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회장 ◆ 교육부 담당자
16:40~16:55	질의 및 응답
16:55~17:00	폐회

- ◆ 백승아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 **강경숙**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 ◆ 김용서 │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 **전희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국회 토론회 축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국회 토론 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최로 함께 뜻을 모아 주신 강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유아학교연대,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여러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유례없는 저출생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질 높은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교육부는 2024년 6월 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교원 자격, 교원 양성 체계, 재정 확보 방안, 관리 체제 정비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가가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공교육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유보통합은 유아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유아를 중심에 두고, 그들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해 각 단계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마을이 함께 키우는 것'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키우는 돌봄 정책'과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제고'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유보통합의 핵심은 모든 영유아에게 차별 없는,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졸속이 아닌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과 보육의 전문성과 질을 높이는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 교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받고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9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 승 아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국회 토론회 축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경숙입니다.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토론회〉에 함께 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유아학교연대, 유아특수교육정상화추진연대,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어, 그동안 유아교육과 보육의 체계적 통합을 통해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지난해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며, 최근에는 이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에 있습니다.

유보통합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교육 체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출발점에서 서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책무입니다. 특히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들이 교육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바쁘신 외중에도 발제를 맡아주신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님, 김경민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장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각계각층의 교육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보통합이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해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분들의 열띤 논의와 제안을 기대합니다.

저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고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해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23일

국회의원 강경 숙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국회 토론회 축사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반반갑습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입니다.

오늘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 유보통합 실행 계획의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님, 조 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을 함 께 모색해 주실 발제자와 토론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사노조는 2024년6월5일, '유아교육 전문성이 확보되는 유보통합을 위한 국회토론회 – 유보통합의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다'를 개최하여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는 유보통합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6월27일, '교육재정 전용계획 중단, 유보통합·돌봄사업 국가예산 확보 촉구 국회의원·교육·보육·학부모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유보통합·돌봄사업의 국가 예산 확보를 통해 교육재정 외별도 국고로 보육·돌봄 소요 예산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이와 관련해 그 어떠한 확신도 주고 있지 못해 아쉬움이 큽니다. 교육부는 2024 년6월27일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으나 유아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재정 확보 방안은 여전히 미비합니다.

영유아기는 아이들의 발달이 시작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과 생애 초기 단계에서부터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보통합의 방향은 보육의 질을 높이고 유·초·중등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 자격 문제부터 교원양성체계, 처우 개선, 시설 개선 등 다양한 부분에서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며, 막대한 추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기존 예산의 이관 방안과 더불어 추가 예산을 정확하게 추계하고 확보하여 유보통합 예산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법제화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정책을 시행하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현장과의 '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와 교육부가 과연 유아교육 전문가인 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큰 의문이 듭니다.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유치원 교사들의 고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으로 확실한 답을 주어야할 때입니다. 그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책임감 하나로 버텨온 숙련된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을 지키지 않고서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유아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유보통합 모델을 함께 모색하고 구체적인 해법을 찾아가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과 유치원의 교육여건 개선, 미래 세대를 위한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9월 23일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용서

본질이 사라져버린 유보통합,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전희영**

얼마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 자치단체가 영유아와 보육기관 사무의 32%~46%를 갖는 '유보통합 시 사무이관'에 대한 교육부 3가지 방 안"을 모두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유아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들에 이어 유보통합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지자체조차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전면 거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이 얼마나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부는 유보통합의 이유를 모든 영유아들에게 질높은 보육과 교육혜택을 주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도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지난 6월 내놓은 유보통합 실행계획은 오히려 유아교육 하향 평준화가 우려되는 내용들이었으며 정작 핵심인 통합모델의 내용 발표는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통합모델조차 없는 선도교육청과 모델학교 운영은 짜맞추기식 전시행정이며 국민혈세 낭비에 불과할 뿐입니다. 유보통합 추진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공교육의 첫출발이 되어야 할 유아교육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심각한 우려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유보통합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024. 5월 전국 유·초·중·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학부모, 일반시민, 보육교사 대상으로 실시한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아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사립기관에 더 많은 지원을 함으로써 공교육기관이 축소되는 현상을 꼽았습니다. 공립보다 두배에 달하는 유아학비 지원은 사립기관 쏠림 현상과 더불어 소규모 공립유치원의 폐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립유치원의 축소는 유치원교사 정원을 축소시켜 교육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유아들의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방향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의 유보통합을 '유치원 민영화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추진한다면 사립유치원이 아니라 공립유치원 살리기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사립유치원의 법인화와 회계투명성 강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의 의무교육으로의 전환, 유아 특수학급 확대 설치 등도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무성을 높이고 생애초기 공정한 교육의 출발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는 유보통합의 바람직한 방향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 0~2세와 3~5세의 연령별 구분속의 유보통합입니다.

이를 위해 0~2세는 영아기관으로, 3~5세는 유아학교로 자리매김되어 질 높은 보육과 유아교육이 보다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사 전문성과 교육의 질 위협하는 특별양성 체제에 대한 검토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이야기입니다.

정부의 유보통합 추진에 대해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이 시기에 유아교육와 영아보육에 종사하고 있는 당사자와 학부모, 전문가, 교육부, 국회가 함께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오늘의 이 토론회가 현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구체적 대안을 모색함과 더불어 대한 민국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의 길을 함께 찾아보는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강경숙 의원님을 비롯하여 오늘 토론회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9월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저희 영



01_유보통합 교원제도의 문제점과 과제점: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포함하여 이덕난 |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대한교육법학회 회장) 02_유보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김경민 |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장, 중부대학교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강경숙·백숭아 국회의원, 유아학교 연대 등 주최 / 정책토론회 / 2024.9.23.

유보통합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포함하여

이 덕 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 (대한교육법학회 회장)

- 목 차 -

- I. 원장·원감 및 정교사 등의 자격 관련 법령
- Ⅱ.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 Ⅲ. 유보통합 교원의 자격ㆍ양성 체제 개편 방안
- Ⅳ.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특별교원양성과정 등
- V. 향후 과제

Ι.	워장 、	워감	미	정교사	등의	자격	과려	법령
	L O	L	ス こ	0	o - 1		<u> </u>	80

- □ 초 · 중등 교장 · 교감 및 교사 · 수석교사 등
- □ 유치원 원장 및 원감
- □ 유치원 정교사
- □ 유치원 수석교사

1. 초 · 중등 교장 · 교감 및 교사 · 수석교사 등

- □ 교직원 : 교장, 교감, 수석교사, 교사, 행정직원
- □ 교사 :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 사(1급·2급)
- 정교사 외에도 비교과교사(전문상담·사서·보건·영양), 실기 교사 등이 있음
- □ 교사 외 학생 교육 : 기간제 교원,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 초·중등의 경우에 학생을 가르치는 모든 교원이 정교사는 아님

정교사 외에 비교과교사, 실기교사도 있음

=> 유보통합 교원의 자격을 모두 정교사로 통일해야 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 유치원 원장 및 원감

- □ 원장 : 1. 원감자격증, 3년 이상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 2. 학식 · 덕망 높은 자, 교육부장관의 인정 받은 자
- □ 원감: 1. 1급 정교사, 3년 이상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 2. 2급 정교사, 6년 이상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2조(교원의 자격) ①원장 및 원감은 <u>별표 1</u>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u>·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 □ 유치원 설립·경영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원장 자격이 없을 경우에 "학식·덕망 높은 자" 규정을 활용하여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선례가 있음
- 현행「유아교육법」제22조 및 별표1 여전히 그 근거가 남아있음
- => 유보통합 이후 원장 원감의 자격은?

"학식, 덕망 높은 자" 규정은 유지시킬 것인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 "학식 도덕망 높은 자" 규정 적용을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 자 결	
중 별	자 격 기 준
	1. 유치원의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원 장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학식 · 덕망이 높은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자
	1. 유치원 정교사(1급)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원 감	과 소 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6년 이상의 교육경력
	과 소 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유치원 정교사

□ 1급 정교사 : 1. 2급 정교사, 3년 이상 교육경력과 재교육

2. 2급 정교사, 석사학위, 1년 이상 교육경력

□ 2급 정교사 : 대학 유아교육과 졸업자 등

=> 유보통합 이후 모든 교사는 정교사(2급, 1급)?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u>별표 2</u>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u>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교사자격기준(제22조제2항관련)

자격급별	자 격기 준
정교사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 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
(1급)	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대학에 설치하는 유아교육과 졸업자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u>각종 학교와</u> 「평생교육
정교사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 한다)졸업 자로서 재학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2급)	3.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준교사	4. 유치원 <u>준교사자격증을</u>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u>가</u> 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유치원 준교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 유보통합 이후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가칭 영유아학교 등)의 교원과 직원 구성에 대한 상상력 필요

특히, 교사 구성을 모두 정교사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적절한 지에 대한 고민 필요

4. 유치원 수석교사

- □ 수석교사 : 정교사 자격, 15년 이상 교육경력
- => 유보통합 이후 수석교사의 자격은? 수석교사의 역할과 필요성은? 초·중등 교원과의 차이는?
 - ③ 수석교사는 제2항의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u>「교육</u> <u>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2호</u> 및 <u>제3호</u>에 따른 교육전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교수·연구에 무수한 자질과 능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u>대통령</u> <u>령</u>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교육부장관이 정하는</u> 연수 이수 결과를 바탕으로 검정·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11, 7, 25,, 2013, 3, 23,〉

□ 추진체계 및	전략	
□ 주요 과제		

- 1. 정부의 추진체계 및 전략
- □ 상향평준화 과제 / 유치원 ㆍ 어린이집 통합 과제

- ◎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 동합연수체계 마련
- ✓ 수요 맞춤 교육·보육프로그램 강화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
 - 통합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
 - 교사처우개선등 🧭
 - 영유아교육과정 개발 적용 🧭
 - 설립·운영기준 마련 🧭

□ 가칭 영ㆍ유아학교 시범사업 후 기관 명칭 결정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 ☑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 시범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 결정

- 2. 주요 과제
- □ 5대 상향평준화 과제의 방향

방향

- ▶ '영유아 최우선' 원칙 중심, 학부모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질 제고 추진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이전이라도, 수요자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 ▶ ^{기청}영·유이학교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적용·확산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제도화 추진
 - * 시범사업의 명칭은 통합기관 명칭 확정에 따라 결정
- 시도교육청이 시도/시군구청과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보육 질 향상
-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일원화와 연계, 주요 사항 제도화

□ 주요 과제

과제	현재	목표
충분한 이용시간 및 일수 보장	 ✔ 유치원-어린이집 간 이용 시간 차이* * (유치원) 8시간 이상, (어린이집) 12시간 ✔ 방합기간, 휴일 돌봄 공백 우려 	 ✓ 기본8시간 + 추가4시간 이용시간 보장' * 연장과정 교사 및 돌봄이력 등 지원 ✓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 지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 과밀환경* 내 교육 돌봄의 질 저하 • (여분이입기품) 했다. 했다. 3 했다. 1:15, 4학에 1:20 (유치원기품) 했되다. 1:24, 5% 보다. 1:28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교육'보육의 질 향상 *(0세) 1:3-1:2 (0-2세) 3차료 모. 명 → 2학급당 1명 보조교사 배치 (3-5세) 평균 비율 1:12→1:8
단계적 무상 교육·보육 실현	✔ 정부/지자체 지원에도 학부모 부담 지속 * (사료유) 원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	✓ 5세 무상교육·보육 우선 실현, ′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통합연수체계 마련	 ✓ 기관 간 교사 직무연수체계 상이* * (공립요) 매년 6여년 이상, (사립요) 매년 약 30시간 (어린이집) 매. 3년마단 40시간 	 ✓ 교사의 전문성 향상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 * 4대 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수 시간 확대(연 60시간), 연구 연수 문화 조성
수요 맞춤 교육·보육 프로그램 강화	 ✔ 영아→유아, 유아→초등으로의 단계적 의행 시 지원 미흡 ✔ 소규모 기관에서의 다양한 교육활동 한계 ✔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체계 미흡 ✔ 특수교육 및 서비스 질 차이 발생 	 ✓ 2세, 5세를 이유연령으로 지정 ✓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내실있는 교육 지원 ✓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 5대 유치원 · 어린이집 통합 과제의 방향과 개요

방향

- ▶ 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다양성·자율성** 보장
-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운영을 위한 **책무성 확보** 동시 추진
-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기준을 보완 및 확정하고 통합법 제정을 통해 시행
- ▶ 기존기관에는 전환에 따른 경과기간을 두어 통합기관으로의 연착륙 유도

통합기관 개요

- ▶ 통합기관은 '**영유아**(0~5세)를 위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
- * 영유아 특성을 반영하여 기존 초중등학교보다는 설립과 운영 측면에서 유연성과 다양성을 폭넓게 보장
- ▶ 명칭은 영유아학교 또는 유아학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히 결정
- 명칭은 **통합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기관에도 일괄 부여**
- ※ 기존기관에 대해 <u>일정기간(예: 10년)</u>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기한 내 설립·운영 <u>기존을</u> 미충족 하는 기관에 대해 향후 <u>행재정</u> 지원 제외 검토

□ 주요 과제

과제	현재	시안
편리하고 공정한 <u>입학방식</u> 마련	 ✔ (유치원) '처음학교로'를 통해 연 2회, 오선모집 이후 추첨 (어린이집) '입소대기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대기, 모집하며, 점수제 적용 	 ✔ (입학) 통합기관의 입학 관련 사항은 공론화 통해 결정 구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 일원화 유치원 입학은 <u>우선모집</u>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 (유치원교사) 3~5세, 전문대학 이상 (보육교사) 0~5세, 전문대학 이상 이외에 보육교사교육원(3급), 평생학습기관 등 학점이수도 포함	 ✔ (통합교원자격) ^{1인}영유아정교사, ^{2만} 영아정교사 및 유아정교사로 구분 ✔ (신^귀양성)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 (현^직취득)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과정 운영

과제	현재	시안
교사 처우 개선 등	✔ (유치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는 전국 동일(월 85만원) (어린이집) 처우 개선을 위한 지급액이 지역별 상이(월 49~59만원)	✔ (처우개선) 사립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
	✔ (유치원) 교원 (어린이집) 근로자	✓ (법적지위) 통합법 적용에 따라, 근로자 → 교원으로 변경
영유아교육과정 개발·적용	 ✔ (유치원) 3~5세 대상, 교육과정 (어린이집) 0~5세 대상, 표준보육과정 	✔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 (유치원, 어린이집) 국가, 지자체 및 사인(법인 단체, 조한 및 개인 포함)	 ✓ (설립주체) 국가, 지자체, 법인 ※ 일부 유형(예: 가정형, 직장형)에는 제한적으로 사인 설립 허용
	✔ (유치원) 3개 유형 * 국립, 공립, 사립 (어린이집) 7개 유형 *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민간, 가정, 협동, 직장	 ✔ (유형) 10개의 유형을 5개*로 단순화 * 국공립, 사립(지정형, 일반형, 가정형, 직장형

✔ (유치원) 교실 유아 1인당 2.2㎡ ✔ (교실 면적) 교실 영유아 1인당 3.3㎡ (어린이집) 보육실 영유이당 1인당 2.64㎡ * 기정형에는 기준 완화, 기존 기관은 경과규정 설정 ✔ (불연재사용) 내부 벽·천장·바닥 적용 ✔ (유치원) 내부 벽·천장 (어린이집) 내부 벽·천장·<u>바닥</u> * 기존 기관은 경과규정 설정 설립·운영 ✔ (유치원) 모든 유치원 체육장 의무 설치 ✔ (실외놀이터) 모든 통합기관 의무 설치 기준 마련 (어린이집) 정원 50명 이상기관의무설치 * 일부 기관의 경우, 기준 완화 또는 <u>대체놀이터</u> 적용 ✔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입지 ✔ (입지요건)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어린이집) 위험시설과 50M 이상 (교육청별 자체 기준 적용 가능) ✔ (유치원) 만 3세부터 초등 취학 전 ✔ (입학대상) 취학전 아동(0~5세) 원칙, (어린이집)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기관 자율 선택으로 연령 학급 운영 가능 ✔ (사립유) 자문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위원회) 심의기구로 설치 의무 (그외) 심의기구로서 운영위원회 의무 운영 ✔ (유치원) 자체평가, 평가주기 교육청 자율 ✔ (평가·회계) 장학·컨설팅으로 개편, (어린이집) 3년 주기 의무 평가 회계 안전 등은 엄격 관리 ✔ (유치원) 의무 규정 없음 ✔ (CCTV)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안 마련 (어린이집) CCTV 설치·운영 의무

Ⅲ. 유보통합 교원의 자격ㆍ양성 체제 개편 방안

□ 정부의 통합교원 자격ㆍ양성 체제 개편 방향	
□ 신규 통합교원 자격 및 양성 방안	
□ 현직 교원의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	

- 1. 정부의 통합교원 자격 · 양성 체제 개편 방향
- □ 0-5세 통합 / 0-2세 & 3-5세 구분 방안 중 결정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통합교원자격 1한 영유아정교사 2한 영아정교사및 유아정교사 신규양성 학사학위*, 대면중심 *전문대학에서도 운영 가능토록 고등교육법(50조의3) 개정 추진 현직교사취득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취득 과정 운영 통합연수체계 4대분이* 중점 연수, 연수시간 상황(연 60시간) *교육과정 실행, 영유아지원, 영유아 정서발달 지원, 특별한 영유아지원



- □ 승급체계 : 2급 -> 1급 -> 원감 -> 원장으로 개편
- □ 개편 후에도 기존 취득 자격(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인정

- 2. 신규 통합교원 자격 및 양성 방안
- □ 유치원정교사와 보육교사의 자격을 정교사로 통합
- **(통합자격)** 영유아정교사(0~5세) 단일 <u>자격과</u>,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 정교사(3~5세)로 구분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검토 후 결정
 - [●]현장교사, 학부모, 학계·단체, 양성대학의 의견 및 [●]0~5세 <u>영유아</u> 교육과정, [●]통합기관 기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 검토 후 결정

	현행	8	개편(안)
보육교사	0~5세 보육	1안	0~5세 담당 영유아 정교사
유치원교사	3~5세 교육	2만	0~2세 담당 영아 정교사 3~5세 담당 유아 정교사

- □ 신규 양성과정 : 학사 이상, 오프라인 중심, 보육교사3급 폐지
- (통합교원 양성) 영유아 교사로서 전문성을 고루 갖출 수 있도록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가병}영유아교육전공)로 신규교사 양성 ※ 자유전공제, 마이크로디그리, 실습학기제 도입 등을 통해 영유아 교사 양성과정 혁신

현행			개편(안)		
보육교사	전문대학, 4년제,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보육교사교육원 등 * 보육교사급 양성은 폐기 예정		영유아 교원	(학위) 학사학위 이상[©] (양성방식) 대면중심 학과전공제 (학과 개 편 ^{개청} 영유아교육과로 개편 [©]	
유치원교사	전문대학, 4년제, 대학원 <u>유아교육전공</u>			※ 바면학자 많은 승급 만으로 원경토	

- ①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50조의3) 개정
- ② 유아교육과와 <u>아동보육</u> 관련학과는 ^{가칭}영유<u>아교육과로</u> 개편을 원칙, <u>비사범</u> 학과는 명칭 변경 없이 '**영유아교육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양성정원은 별도 심사

- □ 원감 자격
- (영)유아 정교사 1급 자격을 소지 후 3년 이상의 교육경력자 대상
- □ 원장 자격
- 원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에게 취득 조건 부여
- → 자격연수과정(200시간 이상) 또는 교육부 승인 대학원 통합과정 등 이수

- 3. 현직 교원의 통합교원 자격 취득 방안
- □ 복수 자격 소지자 : 신청 시 통합 교사 자격 취득
- □ 1가지 자격 소비자 : 특별교원양성과정 또는 대학(원) 신편입
-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현직 교사(유치원 교사, 보육교사)는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 취득



- ① <u>대상자격</u>·운영과목 및 내용·학점은 '24년 정책연구 통해 결정, 개인별 기수강 과목(학점)은 대학별로 인정하되 수요를 고려하여 10년간 운영 검토
- ② 야간주말 과정 개설, 해당 기관에 정원 외 특별 정원 허용 및 영유아교육 학위 수여

- □ 특별교원양성과정
- 대상자격 · 운영과목 및 내용 · 학점은 2024년 정책연구 통해 결정
- 개인별 기수강 과목(학점)은 대학별로 인정
- 수요를 고려하여 10년간 운영 검토
- □ 대학(원) 신편입 과정
- 야간 · 주말 과정 개설
- 해당 기관에 정원 외 특별 정원 허용
- 영유아교육 학위 수여

- □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 운영
-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부분에 어린이집 원장 대상 자격 연수 과정에 대해 기술되었으나, 명확하지 아니함
- □ 유치원 원장 자격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조항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자격을 이미 인정하고 있음
- □ 추진 일정

	′24	′25	'26	'27	•••	′31
자격			통합교사 자격 도입			
신규양성	개편안 확정	관련 법 개정	유치원 · 보육교사 양성 종료	신규 통합교사 양성		신규 통합 교사 배출
현직취득	KD-0109423	5000 900000	현직교원 통합자격 취득			

Ⅳ. 교원 자격 제도의 문제점:특별교원양성과정 등

- □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가?
- □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한 교원 자격 취득의 모호성과 공정성
- □ 교육부와 정책연구팀의 역할 모호, 책임 행정이 요구됨
- □ 어린이집 원장 대상 통합 원장 자격 연수의 모호성

- 1.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하는가?
- □ 비전 : 아이가 행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 목표 :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 · 보육 체계 구축
- □ 교원 자격 개편은 유보통합의 비전과 목표에 부합해야 함
- 영유아 교원과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 □ 0~5세 담당 모든 보육교사를 정교사로 개편하고,
- □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 통합기관에 두는 교사를 정교사로 통일하면 영유아 교원의 질, 교육의 질이 높아지는가?

- □ 영유아 교원의 처우, 연수 등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됨
- 예: 국공립 유치원 교원을 제외한 영유아 교원의 사학연금 가입이 선택(임의)으로 인식되어 기존의 사립 유치원교원의 연금 혜택이 약화될 가능성 등 제기
- □ 이로 인해 영유아 교육의 질까지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부에서 제기됨

- 2.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한 교원 자격 취득의 모호성과 공정성
- □ 영유아 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4차)에서도 특별교원 양 성과정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 제기됨
- 일부 위원이 특별교원 양성과정에 반대 의견도 제기
- □ 실행계획에 제시된 현직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방안은 명확하 지 아니함
- 특히, 특별교원양성과정은 정책연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되었 으나, 정책연구팀에서 가능한 방안 도출/제시가 어려울 수 있음

- □ 현직 교원의 통합자격 취득 필요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취득 경로 및 방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기존의 자격 취득자에 비해 과소하거나 특별한 방식은 시대정신인 공정성에 부합하지 아니함
- 현직 교원이 자격 취득을 위해 현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제시될 경우,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에 어려움 초래 우려도 제기
- □ 특별교원 양성과정의 경우, 필요성과 공정성 등에 대한 명확 하고 설득력 있는 설명, 사회적 합의 미흡

- 3. 어린이집 원장 대상 통합 원장 자격 연수의 모호성
- □ 정부의 실행계획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 □ 이에 대해 영유아 교육 · 보육통합 추진위원회(4차)에서도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 자격 취득 방식의 차이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 대상 자격 연수 과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안내 요청 의견이 제기됨
- □ 정부의 실행계획은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원양성과정, 대학(원) 신편입 과정 중 선택할 수 있도 록 통합 원장 자격 연수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됨

- □ 이 경우 학식·덕망에 의한 원장 자격 취득과 유사한 방식 으로 통합 원장 자격 부여 가능성에 대한 일부의 우려 제기
- □ 어린이집의 유형별 원장 자격 기준과 무관하게 통합 원장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다르게 할 것인지도 모호함
- □ 모든 것이 모호한 상황에서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한 원장 자격 취득 방안에 대해 정책연구팀에서 가능한 방안을 도출 /제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됨

V. 향후 과제

- □ 통합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이 지역 여건 및 학부모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학급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모든 유치원, 어린이집을 통합기관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우며, 그 것이 유보통합의 질 제고 및 유아ㆍ학부모의 요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용적인 방안 마련 필요

- □ 통합기관, 유치원, 어린이집에 두는 교사 자격을 통합 정교 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등으로 열어두되, 3-5세 유아반 정담임은 통합 정교사 자격 소지자로 하는 방안 검토
- 정/부담임 또는 2담임제 운영을 허용하고, 이 경우 부담임 등은 통합 정교사 자격 미소지자도 할 수 있도록 허용
- □ 0-2세 영아반 정담임은 통합 정교사, 기존의 보육교사 자 격 소지자 모두 가능하도록 하되, 보육교사 3급 소지자는 제한하는 방안 검토
- 지역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보육교사 3급 소지자 가능

- □ 정책연구팀에 어려운 과제를 미루지 말고, 정부가 책임행 정에 입각하여 특별교원양성과정의 필요성과 기본적인 방 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팀은 그 방향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 □ 만약, 특별교원양성과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모호하고, 그 방법의 공정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면, 다른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 □ 특별교원양성과정을 통한 원장・원감 자격 취득이 모든 어린이집 원장・원감에 대해 통합 원장・원감 자격을 부여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공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특히,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의 의무교육권 보장

중부대학교 김경민

교육부는 지난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면서 5대 상향평준화 과제, 5대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제, 3대 관리체제 개선 과제, (가칭)영유 아학교 시범사업 추진, 통합기관 기준(시안) 의견수렴 및 확정, 법률 등 개정 추진,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 등의 일정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영유아 교육을 세계 최고로 만들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는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쟁점들이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으며 그 가운데 교사의 자격과 관련한 이슈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힘으로 인해 명확한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에서 의무교육 대상자로 지정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유아와 무상교육 대상인 특수교육대상 영아의 처우에 대한 몇 가지의 문제점 중 교사 양성체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전거지감(前車之鑑), 온고지신(溫故知新)

유보통합에 대한 관심과 정책 마련은 문민정부 시절인 1997년에 이미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확립방안'에서 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지금도 2012년 누리과정을 통한 3~5세 교육과정 일원화, 2024년 정부조직법 개편을 통한 관리부처 일원화를 제외하고는 산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가운데 특히 교사 자격 및 양성체제 통합, 교사 간 격차 해소는 최근까지도 유보통합의 시도를 무산시키는 주요 요인이었다.

교사 자격에 대한 논란은 특수교육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에게 일정 시간의 연수를 통해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정책 제안이 그 시발점이었다. 수차례 관련 단체의 항의와 연구 및 자문 등을 거쳐 교육부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현직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및 대학원에 신·편입학 후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명시되었다. 그러나 대학(원)의 신·편입 과정의 경우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 취득 대학(학과) 및 양성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2014년부터 도입한 '일학습 병행제'는 기업 주도 하에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이 취업 희망 청년층을 학습 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현장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종료 후 국가가 학습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여 자격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다(강세욱, 2016). 독일과 스위스의 직업교육 훈련에서 비롯된 일학습 병행제는 1주일 중 3~4일은 기업에서 일하면서 훈련을 받고 1~2일은 직업학교에서 이론 교육을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내의 경우 매주 토요일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이론 중심 전공교과목과 교양과목을 대학에서 공부하고 주중 5일은 기업 현장에서 기업현장교사와 지도교수가 참여하는 직무교육 위주의 훈련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에 드는제반 비용은 정부가 모두 지원한다. 또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30조(학습근로자에 대한 평가) 제4항에 의거하여 학습 근로자는 내·외부 평가에 합격해야만 자격증

을 받을 수 있다. 일학습 병행제는 동법 제26조(학습근로자의 준수사항) 제2항에 따라 도제식수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여 능력중심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분야에서 일학습 병행을 시행하겠다는 의도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위해 주말이나야간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만들어 학위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수여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발상은 보육교사 혹은 유치원 교사 자격만을 소지한 교사의 통합교사 자격 전환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일학습 병행을 통한 (영유아)특수교사 양성의 문제점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학습 병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일학습병행법)」,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과 제반 시설(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구축, 평가위원회 구성, 기업현장교사 육성, 평가와 자격증발급기준 등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의 소관이다. 그런데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일학습 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 취득 대학(학과) 및 양성 정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4년 정책연구를 통해 규모를 제시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정책 연구가 위의 3가지 법률을 고려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의 협조 체제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이러한 계획은 교육부가 관할하는 교사의 자격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는데 교원자격 취득은 교육부 교원양성 정책의 고유한 업무가 아닌가?

둘째, 일학습 병행제는 이론 교육보다는 기업현장교사가 제공하는 도제식 교육을 강조한다.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 장애통합이나 장애전문 어린이집에 근무하면서 신·편입을 결정한 장애 영유아 교사를 도제식으로 가르칠 기업현장교사는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는가? 또한 기업현장교사의 자격 기준은 마련된 것이 있는가? 설령 이들을 가르칠 기업현장교사가 있다하더라도 일학습 병행제가 초중등교육법의 기준에 부합되는가?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서 교원, 의사, 간호사 등은 제외가 됨에도 엄밀하게 보육시설 종사자에게만 교육부에서 일학습병행제의 특혜를 주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기존의 유아특수교육과는 주간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런데 주말이나 야간에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대학(학과) 및 양성 정원을 확대한다면 주말 반을 따로 개설하라는 의도인지, 아니면 야간 유아특수교육과를 따로 만들겠다는 의도인지 알 수 없다. 실상으로는 둘다 불가능한 일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모든 사범대와 교대는 야간 대학을 개설할수 있어야 공평하다. 유보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성급한 제도가 일부의 특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넷째, 유아특수교육 교사의 교육과정은 교직 22학점, 전공 80학점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교사들의 전공학점이 50학점 이상인 것에 비하면 매우 많은 학점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교현장실습 역시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2028년부터 학기제로 변경된다. 그렇다면 특히 주말이라는 한정된 시간에 전공 교육과정을 모두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학점은행이나 사이버 대학에서 이수한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을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이수한 교과목을 유사 교과목으로 인정하는 것이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우리 사회는 이미 코로나19의 시대를 거치면서 온라인 재택수업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온라인 수업의 한계로 학력저하를 지적하고 면대면 수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속속 등장하였다(강후동 2020). 박소영 등(2020)의 연구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의 81%는 교육부 자격의 4년제 유아특수교사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우선 배치할 것을 요구한다는 결과를 밝혔다. 특수교육대상학생 보호자가 자녀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자격을 4년제 유아특수교사로 한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들의 요구는 전문성 있는 유아특수교사를 장애영유아와 특수교육대상 영유 아가 있는 기관과 학교에 배치하라는 뜻이었지, 보육교사에게 유아특수교사 자격을 손쉽게 부 여하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따라서 자녀교육의 옹호자인 부모의 요구가 교육정책에 반영되어 야 하는 것은 지당한 일일 것이다.

다섯째,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서 2022년 10월 6일에 배포한「대한민국 제2,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의 'III. 주요 우려 및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우려와 권고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49. The Committee is concerned:

- (a) That the State party maintains special education on the basis of a medical impairment-based approach and regularly increases the number of special schools, which results in a high number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including autistic children and children with intellectual, psychosocial or multiple disabilities, receiving segregated special education;
- (b) About the insufficient number of teaching and support staff trained in Braille.
- sign language and accessible modes of teaching and the level of training for teachers on the skills and competencies required to promote inclusive education;
- (c) That children with disabilities who attend day-care centres other than kindergarten do not receive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Education.
- 50. Recalling its general comment No. 4 (2016) and target 4.5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Committee reiterates its previous recommendation¹⁷⁾ and urges the State party to:
- (a) Formulate a comprehensive inclusive education policy with strategies to promote a culture of inclusion in mainstream education at all educational levels, including individualized human rights-based assessments of educational requirements and necessary accommodation, and provide appropriate training for teachers and non-teaching education personnel on inclusive education;
- (b) Provide students with disabilities with assistive compensatory aids and learning materials in alternative and accessible formats, such as inclusive digital access, and modes and means of communication including Easy Read, communication aids and assistive and information technology;
- (c) Ensure that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attending segregated day-care centres operated under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re transferred to mainstream kindergartens operated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 49. 위원회는 다음에 대하여 우려한다.
- (a) 당사국(대한민국)은 의료적 손상을 기반으로 한 접근으로 특수교육을 유지하고 있고, 특수학교의 수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어 분리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자폐성 장애아 동, 심리사회적 장애아동 또는 중복 장애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의 수가 많음
- (b) 점자, 수어 및 접근 가능한 교수법으로 훈련된 교사와 지원인력의 수가 부족하고 통합 교육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역량에 대한 교사 훈련 수준이 불충분함
- (c)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아동은 교육부 지원을 받지 못함
- 50. 위원회는 일반논평 제4호(2016)와 지속가능발전목표 4.5를 상기하고, 이전 권고안¹⁷⁾을 <u>재차 강조</u>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a) 교육 시 필요 사항 및 필요한 편의에 대한 개별화된 인권 기반 평가를 포함하여 모든 교육 수준에서 주류 교육의 포용(통합)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포용(통합)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포용적(통합) 교육에 대해 교사 및 비교육 인력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것
- (b) 장애학생에게 포용적 디지털 접근과 같은 대안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의 보조 기구 및 학습자료, 그리고 읽기 쉬운 자료, 의사소통 보조장치, 보완적 정보 통신기술을 포함한 의사소통 방식과 수단을 제공할 것
- (c) 보건복지부 산하 분리형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 유치원 으로 편입되도록 보장할 것
- 17) CRPD/C/KOR/CO/1, para. 46.

이 권고안은 특수교사의 자질을 우려하며 분리형 어린이집(segregated day-care centres) 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을 일반 유치원에 통합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2016년의 'UN 장애인권리협약(UN CRPD)에 따른 권고안(교육 제24조, 50)'에서 이미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 아 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장애아동이 교육부 산하 일반유치원으로 편입되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24년인 지금까지도 이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2023 특수교육통계' 기준으로 유치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89%이고, 특수 학교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11%인 것과 대조적으로 '2023 보육통계' 기준으로 통 합보육인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영유아는 55%이고 분리보육인 장애전문어린이집에 다니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는 45%이다. 더 이상한 것은 교육부가 2024년 유보통합 계획에서 장애전문어린이집을 80개소를 늘린다는 시대착오적이고 퇴보된 정책을 발표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보통합 실행 과정에서 조기교육이 시급한 교육의 대상인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정책은 매번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였으며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였으며, 관련 단체의 이의 가 제기된 이후에 부랴부랴 제도를 마련하는 등 낮은 장애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UN 이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적합한 교수법 및 통합교육 역량을 갖춘 양질의 특수교사가 부족하 다는 국내의 현실을 우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특수교육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검토되지 못한 특수교사 자격전환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교육부 구성원의 장애인식이 국제사회의 인식 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견리망의(見利忘義), 견리사의(見利思義)

특수교육대상자는 초등과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하는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의무교육 등) 제1항에 따라 유, 초, 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전공과와 만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은 무상교육이다. 특수교육대상 영아의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의무교육의 목적은 조기중재를 통해 이들이 지닌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성인기에 이르러 완전한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실현하는데 있다. 또한 UN장애인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인권기준 및 국내법에 따라 이들의 인권과 교육권을 옹호하려는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반 초등과 중학교의 의무교육과 달리 강제성을 지니지 않는 특수교육법 상의 의무교육은 법리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애를 지니거나 장애의 위험을 안고 있는 모든 영유아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

교사의 자격은 교육부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부여된다. 심지어 교육부는 3~4년마다 반복되 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 기관인 대학이 전공역량을 갖춘 양질의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얼마나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하는가를 평가한 다. 이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는 학과는 폐과의 수순을 밟아야 할 만큼 사범대학이나 일반 대학 교육과는 교육과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심지어 학과 교수의 전공 일치여부, 교 수 1인당 지도학생 수의 비율, 한 과목의 수강 학생 수, 전공 교육과정과 전공 교육과정을 보 완하는 비교과 교육과정 운영의 우수 사례, 교육환경과 시설의 적절성, 원활한 교직 이수를 지원하기 위한 행·재정적 뒷받침 등이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엄격한 평가를 통 해 교원을 양성이 부실한 대학과 학과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그만큼 교사의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육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미흡한 자격 전 환 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교사의 자격 전환은 교육부가 지금까지 입학생과 편입생들을 대상으로 지속해왔던 엄격한 기준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격 전 환과 함께 임용고사를 통해 선발된 교원에게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임용 정원 부족으로 인해 타 기관에서 근무하던 기존의 유아특수교육교 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임용 정원을 늘여야 한다. 그런데 특이하 게도 과밀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사 대 유아 의 비율 확보, 특수학급 부족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64.6%가 특수교사가 없는 일반 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등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025년도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은 오히려 9명이 감소했다. 출생율 감소에 비해 특수교육대상 유아는 2022년 대비 2023년에 1천 여 명이 증가했고, 팬데믹 이후 일반교사들이 어려움을 보고하는 경계선 지능, 발달 지연, 장애 위험(at risk) 영유아들에게도 포괄적인 유아특수교육 지원의 관점에서 한시 적 · 중장기적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박소영, 2024). 이들의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가 필연적이다.

이제 유보통합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이 9월 1일을 기준으로 시작되었다 이 시범사업에는 어린이집 84개와 유치원 68개, 총 152개의 기관이 선정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대한 시행이 발표될 당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된 기관에 대한 고려가 없 었다. 각 관련 단체의 거듭된 항의 결과 특수학급이 있는 4개의 유치원, 13개의 장애통합어린 이집, 3개의 장애전문어린이집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유치부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는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주요 운영 사항 중 교사 대 영아의 수를 점진적으로 1:2로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인 특수교육대상 영아를 시범운영에 포함시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교육부는 보도자료(2024. 08. 20)를 통해 시범사업의 목적을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단계에서 제시되는 현장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보통합 확정(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보통합 과정에서 제안 및 운영되는 정책들에 특수교육대상이 매번 소외되는 이유는 그 정책과정에 참여하고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유아특수교육 전공 장학사가 교육부와 교육청에 없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 꿰기 위해서는 전문가로부터 정책이 구상되어야 하며 전문가를 통해 실현되어야 두 번, 세번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유아특수교사 임용 정원 확대와 더불어 유아특수교육 전공 장학사를 각 시도 교육청과 교육부에 배치하여 정책 입안, 검토, 운영, 평가 과정에서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정책이든 이(利)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벽한 정책은 없다. 그러나 그 정책이 가져올 영향이 무엇인지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와중에 가장 힘없는 약자와 소수자의 희생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밑거름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의(義)인 것이다. 끝으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의 자격 전환을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 스승은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속담과 군사부일체라는 사자성어에서 교직의 숭고함은 세대를 넘어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유아특수교육과 편·입학정원 확대를 통해 정규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책임지는 교사의 사명이자 천직임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강후동 (2020). 대학 온라인 수업 유형과 매체활용 유형별 효과 인식 연구. 한국영어교육학회. 교육부(2024. 08. 20.). 보도자료 - 유보통합 체감도 높이기 위해 전국 152개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운영 실시한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0592&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에서 추출) 박소영 (2024). 유아특수교육의 현재와 미래, 행복한 교육 가을호 특집. 교육부.

박소영, 백종남, 홍사훈, 이정윤, 백상수 (2020). 유아기 의무교육 권리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대상학생 보호자의 지원 요구. 특수교육교과교육연구, 13(3), 249-267.

강세욱 (2016). NABO브리핑 국회예산정책처.

교육부 (2024). 2024년 제4차 영유아 교육 · 보육통합 추진위원회 회의록.(2024.06.27.)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79&boardSeq=10060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17&opType=Nd에서 추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2022)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United Nations.

지정토론

- ◆ **윤지혜** │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 ◆ **김현숙** │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 ◆ **신경옥**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 ◆ 서승호 │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 ◆ 교육부 담당자

유아학교로 유아교육정상화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유아교육위원장 나윤미

유보통합은 1997년 김영삼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관리부처, 교사 양성체계 일원화 문제로 번번이 무산됐다. 교육부로 관리부처가 통합되었다고 하지만 가정어린이집부터 기업형까지 수 많은 종류의 어린이집과, 사립·국공립유치원을 어떤 기준으로 통합할지,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하는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 또한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을 상향 평준화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유보통합 방안에는 예산도 인력도 공공성강화도 없는 빈껍데기일 뿐이다. 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유아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영아기관, 유아학교를 별도로 설립하여 영아에게는 따뜻한 돌봄을, 유아에게는 즐거운 배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0~2세 영아기관, 3~5세 유아학교

3~5세 유아는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 명백한 교육의 대상이다. 반면 0~2세 영아는 양육자와 애착관계가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안정적인 애착 관계 형성은 이후 사회적 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0~2세는 가정양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취업, 양육자의 질병, 학업 등으로 가정양육이 불가피할 시 기관 보육을 허용하고 있다. 기관보육을 하더라도 기관의 형태가 학교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영아 유아 각각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0~2세를 위한 영아기관과 3~5세를 위한 유아학 교를 별도 설립하여야 한다.

통합모델은 영유아의 발달을 최우선해야...

교육부가 6.27일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에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에게 '12시간 돌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맞벌이 부모와 자영업자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방학중 토요일 휴일돌봄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육자의 장시간 노동을 위한 필요이상의 기관보육은 아동학대일 뿐이다. 지금도 유치원에는 보호자가 온 것을 알리는 귀가벨 소리가 들릴때마다 하던 놀이를 멈추고 기대에 찬 눈으로 문 앞을 지키는 유아들이 있다. 영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하기 위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의무 화, 육아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과 가정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성 강화로 유아교육정상화가 우선

전교조는 유보통합에 대해서 유보통합 이전에 공립유치원 비율 80%이상으로 높이는 등 공공 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1996년 2013년 유보통합에 성공했던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 국공립비율이 80%가 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

윤석열 정부는 졸속 유보통합을 중단하고 국공립 확대 등 공공성강화부터 해야 한다.

|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진단과 대안 모색

마무리하며

2022년 유아교육 실태조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보통합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도는 평균 2.83점이었다.(1점 매우 부정적~4점 매우 긍정적) 이는 만 5세 의무교육(3.32점), 유치원 무상교육(3.50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다. 특히 맞벌이 학부모의 경우 2.78점, 외벌이학부모는 2.92점, 미취업 학부모는 2.97점으로 맞벌이 부모의 찬성도가 가장 낮은 점수이다. 유치원 원장들의 유보통합 찬성도는 평균 2.34점, 교사들의 또한 평균 2.15점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는 학부모, 교원, 2년 유예라는 수도권 교육감들의 의견에 이어 기초단체장조차 100% 반대하고 있는 유보통합계획을 전면초기화 하고 교원, 학부모등의 의견이 포함된 장기적계획수립 필요하다.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중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 방안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윤지혜



교육부 유보통합실행계획 중 교사 및 교육과정 전문성 강화 방안

- 1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 2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 3 학급당 유아 수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1.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통합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 로드맵

V.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24.下.~)
- · 통합기관 기준(시안) 의견수렴 및 확정(~'24.) 및 법률 등 개정 추진('25.~)
- ·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24.)

	구분	′24.下	.25 .26 .27		·27			
5	이용시간/ 일수	(유) 1일 8h (어) 1일 12h		1일 ^{기분} 8h+ ^{추가} 4h 운영, 방학 중 운영 확대 추진				
대		^(DAI) 1:3	^(0세) 1:2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조정					
 상	" 교사 대 상 영유아 향 비율 평	^(0-2세) 보조교사 3학급당 1명 지원	(0-241)	지원 추진				
		^(3-5세) 평균 1:12	과밀학급 • 예 (3세반 1:13초과, (4세년	급" 해소 () 1:16 초과, (5세반) 1:18초과	^(3-5세) 평균 1:8 목표			
	화		(공립유) '	면 60h				
과	교사연수	(사립유) 연 30h (어린이집) 3년간 40h	연 30h	연 45h	연 60h			
제	프로그램	이음연령(2/5세) 지원,	소규모 기관 교육 내	실화,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통합지원				
	무상교육		5세 무상	4세 무상	3세 무상			
5	입학방식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 일원화	^{유치원}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대 유	1424	공론화를 통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법 제정 시행에 맞춰 적용(사전 안내 및 경과규정 적		난내 및 경과규정 적용)			
치 원 ·	통합교원 자격·양성	의견수렴 및 기준 확정	관련 법령* 개정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통합교사 자격 도입 형진 교사	신규 통합교사 양성 • 신규통합교사 배출(31) 통한자견 취득			
어			유이교육법, 프랑프육법 현직 교사 통합자격 취득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게획(2024.06.27.)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2.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통합교원 자격 및 양성체계 세부계획



✔ 통합기관의 교원 자격·양성체계는 어떻게 변경되나요? ✔ 영유아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량 제고를 위해 자격·양성체계를 다음과 같이 개편합니다.



〈통합교원 자격·양성 개편 주요 방향〉

통합자격	• ^{1학} 영유아정교사(0-5세) • ^{2학} 영아정교사(0-2세)와 유아정교사(3-5세)로 구분
승급체계	▸ ´2급 →1급→원감→원장´으로 개편
통합교사 양성	ㆍ 학사학위(전공심화 포함) 과정, 대면 중심의 학과 또는 전공제
현직교사 통합자격 취득	· <u>일하습병행이</u> 가능하도록 통합자격 <u>취등과정</u> 운영

※ 통합교원 자격으로 개편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 자격은 인정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게획(2024.06.27.)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3. 현행 유치원 교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비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직위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기타 직원	● 원장, 보육교사, 기타 직원
교사 자격 및 양성 체계	교사 자격	●유치원 교사 1급/2급(교원자격검정령) - 1급 18,251명, 2급 28,632명('22)	● 보육교사 1급/2급/3급(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1급 162,680명, 2급 65,939명, 3급 2,629명(22)
	교(직)원 수	• 55,637명(23.41, 기준, 「교육통계」 - (국공립) 23,975, (사립) 31,662 ※ 88,821,1-2급정교,보건 영양교사동 • 55,124명(23.41, 기준, 「교육통계」 - 보건-영양교사제역시 (국공립) 23,569 (사립) 31,555	• 311,996명(22.12.31, 기준, 보육진흥원 제공) - (국공립) 73,511,(민간) 116,442,(가정) 76,144등 ※ 원칭, 보육교사, 특수교사, 간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 263,587명(22.12.31, 기준, 보육진흥원 제공) 나 건호사 영양사 조리원 등 제외시 (국공립) 62,900(민간) 98,017 (가정) 65,964 등
	양성기관	●유치원 교사 2급 : 학과제 - 2~4년제 대학 유아교육과 등 ※ 방송통신대 포함	보육교사 2급: 학점이수제 - 2~4년제 대학 아동·보육학과, 기타학과 ※ 사이버대,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포함 보육교사 3급: 특수양성기관 - 보육교사교육원
	이수과목	• 72학점 이상 -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 (2급) 17과목 51학점 이상 - 교직과목 미포함
L		-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 (3급) 22과목 65학점 이상
	자격검정 기관	학력만 필요한 검정 : 교원양성대학의 장교육경력 포함 검정 : 교육감	한국보육진흥원장
교사	처우 개선비 ('23년 기준)	●사립유치원 교사 - 담임: 77만원/비담임: 64만원	● 0~2세 보육교사 : 26만원(담임) ● 3~5세 보육교사 : 36만원(담임)
처우	연금	●국공립: 공무원 연금 ●사립: 사학연금	• 국민연금

출처: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추진단(2023), 차근차근 유보통합 준비하기



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 4.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통합의 문제점
 - (1) 영아와 유아의 발달 특성 무시
 - (2) 현장 교원 의견수렴 없는 완전통합 전제
 - (3) 법적 근거 없는 교직 개방
 - 1) 연수를 통한 학교장 자격 남발
 - 2) 특별교원양성과정으로 교사 자격 남발

입법조사처, '보육교사 교원자격 부여'에 사실상 반대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30일 제22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에 맞춰 발표한 '제22대 국회 입법·정책가이드북' 보고서의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 내용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

입법조사처는 유보통합 관련 내용에서 "유보통합 시대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는 보다 유연한 사고를 갖고 대용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 기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프로그램(반) 을 병행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별 여건이나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 통학 수 있다고 지점했다.

또한 유보통합 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에 대한 교원자격 부여 여부에 대해 '기관 간의 몰리 적 통합이나 전체적인 자격 전환 방식의 유보통한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면서 '(이는) '질 높은 새로 문 통합기관을 제공하여 학부모 만축도와 영유아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 성하기에도 효과적인 방면이 아니다'고 집었다.

이어 입법조사처는 "모든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김토가 필요하다"먼서 "공정의 원리에 위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약 22 안 명인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및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무 원연금 대상이 22만 명 증가하게 되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므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면밀하게 검토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을 부



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 5.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제안
 - (1) 영아와 유아의 발달을 고려한 0~2세 영아전담교사 / 3~5세 유아정교사 구분
 - (2) 완전통합 전제가 아닌, 현장 교원 의견수렴 통한 교육 및 보육 전문성 강화 방안 논의
 - (3) 법률에 의거한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확립
 - 1) 연수가 아닌, 현행 유치원장(학교장) 자격 취득 절차 준수
 - 2) 특별교원양성과정이 아닌, 현행 유치원교원 자격 취득 절차 준수



교사 양성 및 자격체계

5. 유보통합을 위한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제안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의 유보통합 모델과 운영(안)>						
		자격 최	소 기준			
현재 소지 자격		[0-2세 보육 과정] [3-5세 돌봄(방과후) 과정]	[3-5세 교육과정]			
유치원 정교사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모두 소지한 교사	→	추가 자격 불필요				
유치원 정교사 자격만 소지한 교사]	본인이 원할 경우, 보육교사 자격 추가 취득	추가 자격 불필요			
보육교사 자격만 소지한 교사	→	추가 자격 불필요	4년제 학위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취득 필요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교사] →	특수학급 담임교사 재직 시 별도 전환과정 불필요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자격만 소지한 교사 (Q.특수학급 담임교사로 근무하고 싶다면?)	→	4년제 학과에서 대면수업을 통해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자격 취득 필요				

다함께 행복한 생애 첫 학교 교육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1.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로드맵

. 자격·양·	IY4점4일IO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 일원화	^{유체원} 우선일반모집 휴 상시입학제 도입				
	140A	공론화를 통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법 제정 시행에 맞춰 적용(사전 안내 및 경과규정 적용)				
	통합교원 자격·양성	의견수렴 및 기준 확정	관련 법령 개정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통합교사 자격 도입	신규 통합교사 양성 • 신규 통합교사 배출(31)		
			П-12-48, 2-62-48	통합자격 취득			
	처우개선	실태 조사 및 세부 계획 수립	처우개선 방안 시행				
집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개정	개정 표준보육과정 시행	0~5세 영요아교육	·과정 마련 및 적용		
통 교육 ³ 합 과	-440	#E#440 110	관련 법령 제개정, * 국교위법 개정 등	0 0 1 0 11 12 2	140 1L X 10		
제	설립·운영 기준	의견수렴 및 기준 확정		통합법 제정 추진·시	행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게획(2024.06.27.)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2. 유아 교육과정과 영아 보육과정 구분의 필요성

<국제표준교육분류 (ISCED)>

수준	범주	내용	
ISCED 0	01 educational development & care	영아발달	보건, 영양 및 건강, 안전
ISCED 0	02 Pre-primary education	유아교육	교육프로그램 참여
ISCED 1	10 Primary education	초등교육	(생략)

UNICEF

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Used interchangeably with pre-primary education, early childhood education (ECE) refers to organized learning programmes for children aged 3 years and up to the start of primary education. Early childhood development (ECD) is recognized as an outcome that encompasses the physical, cognitive, motor, language,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children in the early years.



2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 3.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교육과정 통합의 문제점
 - (1) 영아와 유아의 발달 무시
 - (2) 완전통합을 전제로, 현장 교원 의견수렴 통한 교육 및 보육 전문성 강화 방안 부재
 - (3) 교육과정 운영 적절성 지도감독 방안 미흡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게획(2024.06.27.)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 4. 유보통합을 위한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 제안
 - (1) 영아와 유아의 발달에 적절한 0~2세 보육과정 / 3~5세 유아교육과정 구분
 - (2) 완전통합 전제가 아닌, 현장 교원 의견수렴 통한 교육 및 보육 전문성 강화 방안 논의
 - (3) 교육과정 운영 적절성 지도감독 철저
 - 1) 사립유치원 나이스 도입 의무화
 - 2) 사립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회계감사
 - 3) 교육과정 및 보육과정과 방과후과정 운영 지침 준수 여부 지도감독 철저



학급당 유아 수

1.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학급당 유아 수 로드맵

	구분	′24.下	′25	·26	·27			
	이용시간/ 인스	(유) 1일 8h (어) 1일 12h		1일 ^{기분} 8h+ ^{추가} 4h 운영, 박하 중 우영 화대 초지				
상 영유 향 비설 평		^(DAI) 1:3	^(에) 1:2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조정					
	교사 대 영유아	^(0-2세) 보조교사 3학급당 1명 지원	^(0-2세) 보조교사 2학급당 1명 지원 추진					
	비율 (3-5세) ፲	^(3-5세) 평균 1:12	과밀학급 * 예 (3세반 1:13초과, (4세반	^(3-5세) 평균 1:8 목표				
준 화			(광립유)	언 6Uh				
과	교사연수	(사립유) 연 30h (어린이집) 3년간 40h	연 30h	연 45h	연 60h			
세	프로그램	이음연령(2/5세) 지원,	소규모 기관 교육 내	실화, 정서심리 지원 강화	나,특수교육 통합지원			
	무상교육		5세 무상	4세 무상	3세 무상			

출처: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게획(2024.06.27.)



학급당 유아 수

- 2.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학급당 유아 수 문제점
- (1)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초과학급에 추가인력 지원은 일종의 '투담임제'로, 현장 교사의 찬반 의견 분분
- (2) 학급당 유아 수 기준이 아닌,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기준으로는 한 공간에 다수의 유아로 인한 안전성 미확보 환경에 노출
- (3)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소 방안 부족

	다	일연령 학	급	혼합연령 학급			
구분	34	44	54	3~5세	3~44	4~5세	비고
서울 (공립)	14	20	22				
(사립)	16~20	22~24	24~28	22~24			
인천	15	20	22	18			강화, 옹진은 (-2)
경기	14~18	20~22	24~26	18~20	14~16	20~22	최소 5명 이상
강원	16	22	24				
충남	14	18	20	14			
ਨੇ ਪ ਨ	15	20	23	17			2024: 15/20/22/17(배치 시설 부족시 2명 초과 허용 가능/혼합연령반 제외)
대전	15	22	26				2024부터 감축
세종 (1,2생활권, 읍면지역)	14	18	21	18			
(3,4 생활권)	15	19	22	18			
(5,8 생활권)	14	18	22	18			
전남 (공립) (사립)	15	19	20 21	17	16	20	
전북 (공립)	14	18	20	16	16	18	
(사립)	14~16	18~20	20~22	16~18	16~18	18~24	
광주	16	20	22	20			
경남	15	21	23				
경북	16~18	20~22	24~26	20~24			
울산	16	21	24	21			
부산	14~16	22~24	24~26	22~24	20~22	24~26	
대구 (공립)	18	24	28		-00	00	
(사립)	18~26	24~28	28~30	24	20	26	
제주	15	19	24	15	16	19	사립 29 이하

다함께 행복한 생애 첫 학교 교육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학급당 유아 수

3. 유보통합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제안

- (1)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이 아닌, 학급당 유아 수 기준 수립 필요
- (2) 실질적인 과밀학급 해소 및 과원교사 대책 마련 1) 연령별 최대 기준 감축
 - 2) 학급 감축에 따른 과원교사의 배치기준을 관할청에서 마련하는 법개정





학급당 유아 수

3. 유보통합을 위한 학급당 유아 수 제안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의 유아교육법 개정(안) 제안>

현행 유아교육법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④ 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학교급별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개정(안) 제안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③ 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합청"이라
한다)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영유아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고 0~5세를 통합하는 것인 가?

"유보통합의 대상이 0~5세라는 뜻은, 통합된 관리체계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대 상을 0세부터로 한다는 의미다. 연령이나 발달단계와 관계없이 0세부터 5세 모두에게 같은 내용과 수준 의 교육과 돌봄을 일률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유보통합을 이룬 영국, 뉴질랜드,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교육부가 지원하고 관리하는 범위를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의 발달단계별 요구를 최우선에 두고,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이 제공되도록 하겠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에 대한 오해와 진실(2023.2.12.)'중



감사합니다.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윤지혜



유아특수교육의 상향평준화 방안 고찰

김현숙(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지난 6월 27일 교육부는 세계 최고의 영유아 교육·보육을 꿈꾸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는 의지는 그동안 소외되어 있던 유아특수교육 현장에 불어온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계획(안)을 살펴보면 평등한 출발선만 강조할 뿐 질적 성장, 상향평준화에 대한 고려는 찾을 수 없어 아쉽다. 이에 오늘 특수학교(유치원) 교사의 교사 자격에 대한 주제 발표 내용을 포함하여 유아특수교육의 상향평준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가 동시에 실 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학교'와 '교사'가 준비되어야 한다. 현재 교육부는 장애 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을 뿐 '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 장애 영·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다는 것은 '의무교육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특수교육이 반 드시 필요한 장애 영·유아에게 교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에 근거한 체계적인 '선정'과정이 준수되어야 하고, 선정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의무교육의 질이 보장된 교육기관에 '배치'될 수 있어야 한다. 의무교육은 '학교'에서 '교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평등한 출발선에서 가장 우선될 점은 '교육의 질'이지만, 교육 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선정'과 그에 따른 재정지원(예, 치료지원)만 언급 하고 있어 오히려 교육의 질을 훼손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330호) 개정안」에 장애 영ㆍ 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취득을 위한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규정하고,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교과목 내용의 동일성 을 심사 및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 목 및 학점 충족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려고 한다. 교육부는 실행 계획(안)에서 유보통합 이후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은 통합기관의 특수학교 교사 자격에 의해 실행되고, 해당 자격은 대학(원) 신편·입 과정을 통해 취득하도 록 하였다. 다시 말해, 현행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는 유보통합 이후 새로 발급될 필요가 없는 소멸 예정 자격이나, 오히려 현재 교육부는 해당 자 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과 법 개정이 서로 상반 된 행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유보통합의 방향성 을 잡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의무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로써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지 않는 낮은 장 애인식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유보통합 과정에서 특수교사의 자격 훼손없는 자격 취득 및 양성이 반드시 보장

되어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 흔히 하는 말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늘 주제 발표에서 제안된 것처럼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단순히 학점을 이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의 철저한 관리와 평가를 통해 질이 보장된 학과에서 유아특수교육을 수학(修學)하는 과정은 이론과실제(실습)를 병행하며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이다. 교사의 역할을 깨달아 유아특수교사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아특수교사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사유의 과정 없이 공장에서 찍어내듯 받은 자격이 미치게 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이 소외 되어온 역사는 짧지 않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우리나라 최초의 학급은 1962년에 인가되었다. 하지만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은 그로부터 27년이 지난 1989년에 처음으로 고시되었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유아특수교사는 교육과정 고시 이후 11년이 지난 2000년에야 비로소 현장에 배출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25년이 흐르는 동안 유치원과 특수학교에 배치된 유아특수교사는 전국적으로 2,430명에 불과하다. 특히, 첫 학급이인가된 이후 62년이 지난 지금, 유아특수교사가 현장에 배치된 이후 25년이 지난지금,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을 수혜받는 영·유아는 9,216명,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8%에 불과하다. 62년의 세월 동안 국가는 채 만 명도 되지 않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을 확보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여전히 특수학급의 수는 부족하여 2022년 기준 유치원 특수학급 과밀 비율은 경기 34%, 대전 28%, 강원 40%, 경북 29%, 제주 67%, 충남 29%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심각한 수준이다. 현 상황으로는 '선정'이 되어도 '배치'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유보통합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교육권 보호를 위해 특수학급 확충, 임용 고시 선발 확대 등을 통해 이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와 '교사'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유치원과 특수학교 어디에 다니는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개선 및 12시간 일과 운영이 보장되어야 한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따르면 특수교사 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비율의 점진적 검토가 계획되어 있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내용을 보면 1:3 비율로 점진적 개선을 제안한다. 교사 대 영·유아의 비율개선은 교육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에 매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7조 2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중도·중복장애 영·유아가 배치된 경우 인원을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유보통합을 통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의 상향평준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3 비율로 개선되어야 하며 더불어 중도·중복장애 영·유아에 대한 배치와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의 조정 및 수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중도·중복장애 영·유아는 주로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특수학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유치원과 어린이집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수학교에 다니는 영·유아는

오히려 차별을 당하고 있다. 특히 특수학교 유치원은 초·중등 학교급과 병설되어 유치원만의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지원을 요구하지만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에 지원조차 할 수 없었다.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은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이상적 모델을 24년부터 현장에 구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역시 변화의 한 주체라면 이들이 이용하고있는 다양한 기관이 충분히 고려되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도 이상적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야 할 것이다.

또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1일 12시간을 이용할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게 되어 있다. 현재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에 특수교육대상 유아 담당 인력을 배치할수 있으나 예산 미확보, 인력 구인의 어려움으로 잘 실행되지 않고, 방과후학교 담당자의 낮은 장애인식 등으로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방과후과정 참여에 제한이 있다. 더욱이 특수학교의 경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가 희망 시 1일 12시간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나 특수학교에다니는 영·유아는 이를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교육·돌봄 공백에 대해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가족은 "벼랑 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이는 부모의 절박한심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만큼 진입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없다는 것을 내포한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그들의 가족은 교육·돌봄의 정책에서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가 추구하는 세계 최고 교육·돌봄 정책의 바로미터가 되어야 한다.

셋째,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를 위한 전문성 있고 일관된 정책 실행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발표와 함께 영·유아 교육·보육사무는 교육부로 일원화되었고, 현재는 각 시·도 교육청에 유보통합추진단이 만들어지며 시·도 차원에서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6월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라 영유아정책국에 6개 과, 126개의 업무를 명시하였다. 그러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관련해서는 '영아, 장애아 및 다문화가족 영유아 등 취약보육서비스 등 지원'단 한 줄이 표기되어 있다. 지난 7월 12일 제416회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의에서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영·유아 특수교육 부분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영유아 특수교육과 신설을 약속하였으나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신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시·도 교육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 교육부, 교육청 모두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관한 업무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겠다는 답변 뿐이다. 사실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소외 현상은 유보통합의 시작부터 있었다. 22년 12월 29일 교육부는 「영유아교육·보육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하며, 유보통합의 첫 단추를 꾀

었다. 그러나, 공개된 내용 속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와 특수교육 행정인력, 전문가 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었다. 이에 특수교육 관련 단체들이 성명을 내며 강력하게 항의하였고 교육부는 뒤늦게 부분적으로 시정하였다. 교육부는 이미 유보통합의 첫 단추부터 특수교육에 있어 미흡한 행보를 보였다. 23년 2월 15일에 「영유아교육・ 보육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주요 의견 검토 결 과 예고안의 제2조제2항 '유치원', 제3호'어린이집'을 삭제하여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영유아(장애 영유아 포함)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 다고 하였다. 하지만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 특수교육대상 영아에 대한 내용은 전무하고,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대상 영·유아는 배제되었으며, 2배로 늘어나는 대상자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서과피지(西瓜皮 紙)하고 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일관되게 정책을 계획·실행할 전문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특수교육대상 영·유 아의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진단평가, 기관배치, 교육과정, 통합교육, 협력교 수, 관련서비스(치료지원, 통학비,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인력, 영아교육지원, 방과 후과정, 돌봄(늘봄)'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개정, 교육과정과 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장학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특 수교육대상 영·유아와 기관을 위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장하고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 출신 교육전문직(연구사, 장학사)을 선발하여 교육부와 지역단위 영유아 교 육·보육 업무 이관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행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23년 2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시, 장애 영유아에 대한 교육권을 보장하고 장애 영·유아의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도 당연히함께 논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부의 행보를 살펴볼 때 격차해소를 위해 하향평준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이 필요하고, 기존 뿐 아니라새로 선정 배치되는 모든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유치원과 특수학교 어디에서든 유보통합에 따른 변화를 누리며 양질의 의무교육을 수혜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야 할 때이다.

유보통합 실행계획 속의 영아 보육 현장의 방향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 신경옥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고작 0.7프로에 그치고 있고 심각한 저출생 문제와 함께 어린이집들은 폐원이 속출하고 있고 많은 보육인들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일·가정 양립의 목표와 함께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을 목표로 국가가 책임지고 실현하겠다며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생애초기 교육의 중요성과 영아기 안전사고의 취약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각계각층에서 강조하고 학자들의 연구 결과로 영아들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조정되어야 하고 영아기일수록 보육 비용 비율은 증가되어야 한다는 결과가 무색하게 유보통합 실행 계획 속에는 그 어떤 영아보육 정책은 없었다.

어느 기관에 다니더라도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배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부 보도자료, 24.6.27)는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은 그냥 발표 자료일 뿐이다.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보육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현실성 있는 현장의 소리가 반영된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한다.

생애초기 교육·보육기관인 가정어린이집!

선정된 시범사업 지정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첫 번째 사회기관 인 영아 보육 현장은 철저하게 배제되어 다양한 소통과 차별없는 유보통합 의 목적에 맞지않는 결과를 보이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각시도교육청에서는 내년 모델학교 시범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온전하게 보육·교육 현장을 지키고 아이들과 함께해야 하는 원장들이 정치인들을 찾아다니고 공무원들을 찾아다니며 대한민국의 보육·교육 현장의 정책을 애걸복걸하는 현실이다.

지금까지 수년간 영아 보육과 유아 교육을 지켜온 현장은 국가로부터의 준비되지 않는 정책으로 인하여 분열되고 혼란 속에 있다.

유보통합의 목표가 균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인데 근거리의 영아보육 현장을 폐원의 위기로 몰아넣는 정책은 부 모와 영아에게 보육서비스를 퇴보시키는 정책이지 않을 수 없으며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는 아동의 권리 원칙마저 반영하고 있지 않다.

특히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과 차별금지의 원칙에서 밝히는 모든 아동이 누

려야 할 권리를 기만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영아를 위한 정책이 너무나 미흡하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지원방안을 살펴봐도 발달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시기에 대한 정책이 소외되어 있으며 유아위주의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은 수정되고 다시 계획되어야 한다.

유보통합을 지향하는 모델을 2024년 100개 내외, 2025년에서 27년 사이에는 1,000개를 추가 지정해서 실행한다는 계획은 현장의 격차와 기관간 차별을 더욱 가중시키는 계획으로 전면 다시 조정하여 폐기되어야 한다. 시범이 아닌 유보통합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밝히고 모두가 동일하며 평등하게 반영되는 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하루빨리 개정하라

- 모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는 국가의 차별없는 정책이다. 대한민국의 국민을 길러내고 인재를 양성하는 인간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시기인 영아기 시기, 모든 영유아가 행복한 권리를 보장받고 전문성을 가진 영아 보육 교직원들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유보통합의 긍정적인 목적은 우리나라 '모든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여 출발선 평등을 보장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의한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영유아들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질 높은 교육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평등권"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보통합이 시작되어 만 0~ 만2세를 교육하고 돌보는 기관가인 가정어린이집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평등권이 보장된 유보통합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보통합 과정을 바라보는 학부모의 우려

세종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 서승호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들이 받는 교육과 보육의 수준을 상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는 교육의 질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영유아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자격이나 수준도 상향 조정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모든 수준이 상향 조정 된다면, 학부모로서는 크게 우려할 이유 없이 환영할 만합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유보통합 추진 과정을 보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하나 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부모 입장에서 살펴본 몇가지 우려 사항입니다.

1. 체계적 계획이 없이 유보통합이 진행될 경우 교육뿐만 아니라 보육의 질까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리 체계만 일원화

유보통합으로 인해 어린이집과 관련된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어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고, 어린이집은 보육, 돌봄을 담당하는 보육기관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학부모들은 그 차이점에 따라 교육기관인 유치원,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중, 내 자녀에게 더 맞는 기관을 선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체계적 계획이 없이 단시간에 두 기관의 운영 체계가 통합되면서, 현재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의 질이나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보육 서비스가 오히려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교육대로, 보육은 보육대로 만족스럽지 않을 거라는 걱정이 큽니다.

관리 체계 일원화 이후, 누가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 교육과 보육의 모호한 전문성

아시다시피 유치원은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형태가 있으며,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부모들은 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실히 하기 때문입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전문가인 유치원 선생님은 우리 자녀의 발달에 맞는 놀이나 교육활동을 제공합니다. 어린이집은 그 형태가 더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은 내 아이에게 세심한 보육과 돌봄 제공을 원합니다.

유보통합은 이런 교육과 보육이 잘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의 교사가 교육도 하고 보육도 하는 형태가 아닌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와 보육을 제공하는 교사가 각각의 영역에 서 전문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2.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의 변화에 대한 우려와 유보통합 재정 확보의 불투명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 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의 변화에 대한 우려

유보통합의 핵심 중 하나는 교사의 자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자격을 하나로 통합하여 새로운 자격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새로운 자격으로 교육과 보육을 같이 제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유치원교사는 대학 학사과정을 통해 전공을 이수하여 유치원 정교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고, 보육교사는 대학 학사과정이 아닌 온라인이나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또한 국공립 유치원교사는 국가시험인 '임용시험'을 합격해야합니다.

이 과정을 신중한 논의없이 무작정 통합하겠다는 것은 부모입장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보육 교사가 추가 교육 없이 유치원 교사가 된다는 것인지, 보육 교사에게 추가교육이나 재교육을 국가 지원으로 시키겠다는 것인지,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등 학부모에게는 구체적인 정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깜깜이 통합은 학부모들 사이에 우려와 의심을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입장에서는 굳이 교사 자격을 통합하는 데 비용을 쓰기보다는 각각의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책임지는 형태로 가되, 이 비용을 시설의 환경 개선이나 양질의 교재교구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또한 학부모들은 이런 변화가 교사들의 사기 저하나 이직으로 이어져 아이들이 받을 교육의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합니다.

• 재정 확보에 대한 우려

앞서 말씀드렸듯, 교사의 자격을 통합하는 데에만 해도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보육교사들의 자격을 유치원교사만큼 상향 조정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용까지 포함한다면 그 규모는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비용을 국가 비용으로 충당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 그만큼의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유보통합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시설도 상향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확보할 구체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당장의 유보통합은 부모나 아이들 모두에게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시 부모들은 통합 후 교육비나 보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3. 제도 전환의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개별 학생에 대한 지원이 약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 유보통합 이후의 청사진을 모두 보여주고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불안한데, 앞으로의 유보통합 이후의 기관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나 시행초기의 문제점들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세심하고 체계적인 시행을 요구합니다.
- 유보통합 이후 소규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통합의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특히 학부모들은 자신이 신뢰하던 집 근처의 작은 어린이집이 문을 닫거나 대규모 기관으로 합병될 가능성은 없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장애 아동을 위한 특화된 지원이 약화되거나 특수교육 교사들이 부족해질 가능성도 보여, 학령인구가 적은 구도심이나 특수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큽니다. 거주하는 지역이나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질높은 유아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유아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유보통합 모델 유보통합 실행계획의 문제점진단과 대안 모색

3. 유보통합은 우리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유보통합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만 분명히 한다면 유보통합에 혼란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들의 입장에서 교사 자격의 통합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와 보육을 제공 하는 교사가 공존하는 것은 유보통합이 아닐까요? 오히려 각각의 전문적 영역에서 우리 아이들 을 위해 함께 제공되는 것이 더 양질의 유보통합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마련이 불투명 한 상황에서 현명한 예산 활용을 비롯하여 아이들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고민하며 해결하는 유 보통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